

● 제267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6. 4. 2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1106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시장

나. 제 안 일 : 2016. 4. 7.

다. 회 부 일 : 2016. 4.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1)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복지정보 제공 및 연계,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의거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정사항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무임.
- 3) 발달장애인은 인지력, 의사소통, 자기통제 능력 부족으로 평생 동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로, 발달장애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위탁기간 : '16.7.1.~17.12.31(보건복지부 권고)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11월) 시행에 따라 국비 및 시비로 운영되는 최초 시설로, 전국 지자체의 운영 성과분석을 위하여 동일한 위탁기간을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요청함

○ 위탁사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복지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유기발생 시 현장조사·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지원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요예산(안) : 470백만원(2016년, 국·시비 각 50%)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신규위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2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위임·위탁)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필요성

- 발달장애인은 인지력·의사소통·자기통제 능력 부족으로 평생 동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로, 발달장애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2항

-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2항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위임·위탁) 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제9호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16년 예산(470백만원, 국·시비 각 50%) 확보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동의안의 취지

- 2015.11.21.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33조제2항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상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¹⁾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필요성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 서울시 전체 등록 장애인은 393,380명이고 이 중 발달장애인은 약 7.3%에 해당하는 28,808명으로 그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

<표> 서울시 발달장애인 연령별 현황('15. 12월말 기준, 단위 : 명)

합 계	9세 이하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28,808	2,065	7,115	7,594	4,923	3,608	2,277	852	374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또한 발달장애인은 인지력·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여 2015.11.21.부터 시행함.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발달장애인 조례”)도 2016.1.7. 제정·시행됨.
-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들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 할 것임.
- 보건복지부의 「16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계획」(2016.1.)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광역지자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 유기적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 정책의 중심 전달체제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음.
-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신규 설치할 계획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개요〉

- ◆ 장 소 : 미 정
- ◆ 주요 업무 및 운영인력

구 분	주요 업무	인력규모
개인별 계획지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지원 정보 제공·연계 발달장애인 가족 교육·상담 지원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	센터장포함 10명 이내
권익 보호	공공후견인 감독·업무지원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보호조치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 참석	
운영 지원	지역센터 운영 업무(예산·결산, 시설관리 등)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관리 및 전산·통계관리 등	
(비상설) 운영위원회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권리구제,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인 이상 10인 이하

- ◆ 시설기준 : 사무실, 상담실·교육실(각 16.5㎡ 이상), 진열대 등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발달장애인법 제33조제2항 및 발달장애인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2)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에 맞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동 동의안에서 제시한 민간위탁 근거가 되는 사무내용은 민간위탁 조례 제6조3)제1호에 해당하는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2)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삭제

3)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인정한 사무”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나. 민간위탁 방식의 적정성 검토

- 발달장애인법 제33조 및 제41조, 발달장애인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②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③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복지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
 - ④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 ⑤ 발달장애인 유기발생 시 현장조사·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지원
 - ⑥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상기와 같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복지정보 제공 및 연계,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을 고려한다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은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영방식보다는 민간위탁방식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